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2

제 안 일 자 : 2018년 11월 22일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지난 9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 시 “폭염”뿐만 아니라 “한파”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것을 반영하고, 중앙정부에서 폭염 관련 대피소를 “무더위쉼터”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골자

○ 지진대피소뿐만 아니라 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(안 제43조의2)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3조제1항 중 “자치구청장(이하 “시장 등”이라 한다)”을 현행과 같이 “자치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안 제3항 및 안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안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“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”를 “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안 제2항 중 “지진대피소의”를 “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의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·정비하여야 한다.	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---- 자치구청장(이하 "시장 등"이라 한다)----------.	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---- 자치구청장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 등은 대피소 간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부착하여 시민이 대피소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	<삭 제>
<신 설>	④ 시장 등은 대피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고,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과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	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	제43조의2(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----------. -----

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**지진대피소의**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--.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**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의**--------------. **다만,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**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“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”를 “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진대피소의”를 “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의”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----------. ---------- ② ----------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의----------. 다만,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